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10일,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상정,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훈 의원)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범수)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의 투표시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위성곤의원).
- 헌법 제130조제2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확인 가능한 투표권자의 범위인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윤건영의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